



미국의 소음규제 및 표현의 자유

정보신청기관 : 경찰청 정보국 정보1과

I. 서론

미국의 소음규제는 주로 주법이나 자치단체 조례 등에 의하여 규율된다.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소음뿐만 아니라, 시위나 집회시의 소음도 마찬가지이다. 연방법은 상거래(Commerce)를 규율하여야 하는 필요의 범위에서 상품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을 규율하거나 주 정부, 자치정부의 소음통제에 관하여 이론적, 재정적 도움을 주기 위하여 만들어져 있을 뿐이다.¹⁾ 따라서 시(city), 군·구(county)는 자신의 환경에 맞추어 소음을 규율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단, 헌법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므로, 자치단체 등의 규제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서는 안된다. 따라서 조례에 의하여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경우, 이는 시간, 장소, 방법(time, place and manner)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이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규제는 지나치게 넓거나 애매한 내용이어서는 안된다. 다음에서는 연방, 주법 및 조례를 차례대로 살펴보고, 소음규제를 통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단, 주법 및 조례의 경우, 모든 주를 소개할 수 없으므로 소음관리에 있어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캘리포니아 및 로스앤젤레스의 예를 살펴보기로 한다.

II. 소음 규제 관련 법률

1. 연방 소음 규제법 (Noise Control Act Of 1972, 42 USC 4901 이하) 및 공동체 소음 규제법(Quiet Communities Act of 1978, 42 USC § 4913(1978))

주간(interstate) 상거래 등을 규율할 수 있는 권한을 의회에 부여한 연방 헌법(Article 1,



1) 42 USC § 4901, section 2(a)(3)

Section 8, Clause 3, Commerce Clause)의 규정에 근거하여 제정된 연방 소음 규제법은, 상품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규제를 위한 연방차원에서 연구와 활동을 효과적으로 조율하며, 상품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기준을 설정함에 있어 이를 인가하고, 국민들로 하여금 상품에서 나오는 소음 및 소음을 줄이기 위한 조치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제공을 규제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이다.

한편 공동체 소음규제법은 환경보호청(Environment Protection Agency; EPA) 내의 소음 완화 및 규제국(Office of Noise Abatement and Control)에서 주정부 및 지방정부가 소음을 규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이다.²⁾ 즉, 기금(grant)의 지원을 통하여 주정부 및 지방정부가 소음 규제방안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하였다. 모델 소음규제법을 만들어 참고하도록 하였고, 소음규제와 관련한 연구를 주도함과 동시에 주정부, 지방정부의 직원들에게 소음 규제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시행 5년 후 기금의 중단으로 이러한 지원은 계속되지 못하였다.

2. 캘리포니아 보건 일과법(California Health and Safety Code, Division 28. Noise Control Act, § 46000 이하, 이하 '소음 규제법' (CA))

각 주에서는 각 주 시민(state citizens)의 건강 및 복지를 증진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경찰권에 근거하여 소음을 규제할 수 있다. 캘리포니아 주법을 예로 들어 주에서의 규제를 살펴본다.

(1) 입법의 목적

소음 규제법(CA)의 목표는 주 시민(state citizens)의 건강 및 복지를 위협하는 소음으로부터 모든 주민을 보호하는 환경을 제공하는 데 있다.³⁾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주정부의 소음통제활동을 조율하고, 주정부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돕는 데 법률을 제정한 목적이 있다. 본 법률에서 제어하는 소음은 사람에게 의한 소음뿐만 아니라, 동물, 기계, 자동차, 항공기 등에 의한 소음을 포함한다.⁴⁾

(2) 소음관리국의 소음규제

먼저 국무부(State Department) 안에 소음관리국(Office of Noise Control)을 두고, 주 내의 소음관리 업무를 총괄하게 한다. 소음관리국에서는 직접 소음감시 업무를 하면서도, 산하 단체, 즉 시(city), 군·구(county) 등이 소음규제



2) 42 USC § 4901, section 2(b).

3) 소음 규제법(CA) § 46000.

4) 앞의 법률 § 46022.



관련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지역별로 적합한 모델 규정을 만들어 주고,⁵⁾ 소음의 허용기준을 제정하고, 소음이 인체, 동물, 식물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며, 소음에 관련된 정보를 보급하는 업무를 담당한다.⁶⁾

뿐만 아니라 주정부의 각 기관에서 행하는 소음관련 연구, 예방, 통제 업무를 조정하며, 이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표한다.⁷⁾ 소음관리와 관련 있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주 정부 기관에서 관련 규정을 변경하는 경우, 소음관리국의 사전 문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⁸⁾ 소음관리국에서는 주정부의 각 기관에 특정 규정의 채택을 요구할 수 있다.⁹⁾

(3) 소음 지도(Noise Element)의 활용

소음관리국에서는 캘리포니아 정부법(California Government Code section 65302)에 따라 시 및 카운티에서 의무적으로 채택하여야 하는 소음요소(Noise Element)의 모델을 만

들어 각 시 및 구에서 참조하도록 하고 있다.¹⁰⁾

이 소음지도는 관할 내의 각종 소음을 계량화하여 지도상에 표시하는 것이다. 시, 군은 이를 주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이는 도시계획 및 주거지의 건설 등에 참고가 된다.¹¹⁾ 또한 시, 군은 이 소음지도의 보고시 특정된 현재의 소음문제 혹은 미래의 발생 가능한 소음 문제에 대한 대책을 함께 보고하여야 한다.¹²⁾

3. 조례(Los Angeles Noise Regulation)¹³⁾

구체적으로 소음을 규제하고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벌하는 것은 조례(ordinance)를 통해서이다. 조례에서는 소음의 종류, 소음의 측정방법, 지목별로 허용되는 소음의 한계, 음원의 종류별로 허용되는 소음의 정도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¹⁴⁾



5) 각 도시의 특성에 맞으면서도 주 전체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각 도시가 소음관련 조례를 정할 때에는 주 법무부장관, 카운티(county) 감독관, 캘리포니아 도시협회와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앞의 법률 § 46062).

6) 앞의 법률 § 46050.

7) 앞의 법률 § 46071, 자체적으로 연구를 행할 수 있으며 연구활동을 지원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46080).

8) 앞의 법률 § 46074.

9) 앞의 법률 § 46075.

10) 앞의 법률 § 46050.

11) California Government Code section 65302 (f). 여기서 확인하여야 하는 소음은 도로, 자동차, 열차, 항공기 등을 포함한다.

12) 앞의 법률, (f) (4).

13) Los Angeles City Ordinance, Chapter XI, Noise Regulation.

14) 앞의 조례, Section 111.01, Section 111.02.

(1) 소음측정기 및 측정방법¹⁵⁾

소음의 측정은 A-Weighting 소음측정기(sound level meter)를 이용, 지상 4피트 내지 5피트 사이에 두고 하되(실내에서는 벽면, 천정으로부터 4피트 이상), 반사면이 있는 곳에서 최소한 10피트 이상 떨어진 곳이어야 한다.¹⁶⁾ 또한 15분 이상 간격을 두고 측정하여 그 평균값(데시벨, dBA)을 수치로 인정한다. 또한 주간(07:00~22:00) 소음이 60분을 기준으로 15분 이내에 그치는 경우 5데시벨을 감하며, 지속적인 소음이나 반복적인 충격소음(impulse noise)인¹⁷⁾ 경우 5데시벨을 더한다.¹⁸⁾

(2) 지목별, 종류별 소음 한도 기준

농업지역, 주거지역(A1, A2, RA, RE, RS, RD, RW1, RW2, R1, R2, R3, R4, R5)에서는 주간 50데시벨, 야간 40데시벨을 한도로 정해 놓고 있으며, 주차, 상업지역(P, PB, CR, C1, C1.5, C2, C4, C5, CM)에서는 주간 60데시벨, 야간 55데시벨,

경공업지역(M1, MR1, MR2)은 주야간 65데시벨, 중공업지역(M2, M3)은 주·야간 70데시벨로 정해 놓고 있다.¹⁹⁾

이 수치를 추정 대기소음 수준(ambient noise level)이라고 부르며, 이 기준보다 실제 대기소음이 낮더라도 이 수준을 기준으로 조레위반 여부를 판단한다.²⁰⁾ 통상 이 기준치를 단순초과하거나 기준치를 5dBA 이상 초과하는 경우 위반이 된다.²¹⁾ 예를 들어, 라디오나 텔레비전 등의 소리는 주거지역 내에서 음원으로부터 150피트(45.72m) 밖에서 들리거나, 주거지역 500피트(152.4m) 바깥에서 들리거나, 이웃집에서 측정하여 위의 기준에서 5데시벨을 초과하는 경우, 본 조레를 위반하는 것이다.²²⁾

확성기 사용은 조레에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로. 인도. 공원. 공공장소에서, 연설. 설명, 대화, 강연, 음악방송의 목적으로, 고정되거나 이동. 탑재된 것을, 설치. 사용 혹은 작동할 수 없다.²³⁾ 주거지역 및 주거지역으로부터 500피



15) 같은 소음이라도 측정 위치에 따라 수치의 차이를 보일 수 있다. 통상 소음측정 위치는 건물 혹은 토지의 경계선상 혹은 불평, 불만이 발생하는 장소를 기준으로 한다.

16) 앞의 조레, Section 111.02 (a).

17) 충격소음(impulse noise)은 1초이내의 짧은 급작한 소음을 말한다.

18) 앞의 조레, Section 111.02 (b), 측정위치는 음원이 위치한 부동산의 경계선 혹은 피해자가 피해를 호소하는 지점이 되며 일정한 제한(예, 음원으로부터 25피트 이상)이 있을 수 있다.

19)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서(permit)를 받아야 한다. Section 103. 111.

20) 앞의 조레, Section 111.03.

21) 앞의 조레, Section 112.01 (c).

22) 앞의 조레, Section 112.01 (b).



트 이내 지역에서는 상시 확성기가 상업용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으며,²⁴⁾ 비상업용이라 하더라도 주거지역 및 주거지역으로부터 500피트 이내에서는 학교나 교회에서와 같이 통상적인 활동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후 4시 반에서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사용할 수 없다.²⁵⁾ 주거지역 (및 500피트 이내) 외의 모든 지역에서는 비상업용 목적의 확성기 사용이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금지된다.²⁶⁾

또한 확성기를 사용하더라도 그 소음의 크기는 제한된다. 즉, 음원으로부터 200피트 이상 거리에서 들려서는 안되며, 어떤 경우라도 그 소리가 비정상적으로 크거나 거슬리게 하여 그 소리를 듣는 정상적인 감각을 가진 통상인을 지나치게 성가시게 하여서는 안된다.²⁷⁾ 또한 사용 중인 병원이나 학교, 교회로부터는 최소한 200피트 이상의 거리에서 사용되어야 하며, Central Traffic District, Vermont Avenue와 La Brea 사이의 Hollywood Boulevard, Wilshire Boulevard, Sunset Boulevard, Vine Street에서는 언제라도

사용할 수 없으며, 도로상에서는 오후 4시30분 이후 익일 오전 9시까지 사용하는 사용할 수 없고, 일요일에는 도로상에서 사용할 수 없다.²⁸⁾

(3) 기준 초과 소음의 사용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의 사용은 경찰서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며,²⁹⁾ 공공 오락장소에서 소음이 95데시벨을 초과(일시적 초과 포함)하는 경우 경고사인을 설치하여야 한다.³⁰⁾ 사전허가는 경찰위원회(Board of Police Commissioners)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도로점유는 공공업무과 (Department of Public Works)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³¹⁾

Ⅲ. 소음의 규제에 대한 표현의 자유에 따른 헌법상의 제한

1. 시간, 장소, 방법(Time, Place and manner)에 관한 합리적인 제한

소음에 대한 규제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게



23) 앞의 조례, Section 115.02.

24) 앞의 조례, Section 115.02 (a).

25) 앞의 조례, Section 115.02 (b).

26) 앞의 조례, Section 115.02 (d).

27) 앞의 조례, Section 115.02 (f) 2, 정상적(reasonable)인, 통상인(reasonable person), 크거나 거슬리는 소리(loud and raucous) 등은 경험칙에 의하여 법원이 확인할 수 있는 개념이다. 즉, '모호하기 때문에 위헌'이 되지 않는 규정이다.

28) 앞의 조례, Section 115.02 (g)(h).

29) 앞의 조례, Section 115.02, 특별 행사(Special Event) 허가 형식을 띠게 된다.

30) 앞의 조례, Section 112.06.

31) 앞의 조례, Section 103.111.

되더라도 내용상 중립적인 시간·장소·방법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로서 정부의 합법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단이며, 표현의 자유를 실현할 수 있는 대안을 남겨 둔 경우 가능하다.³²⁾

(1) 내용 중립적인(content-neutral) 제한

규제가 표현하는 내용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즉, 정부가 맘에 들면 허가를 하면서 맘에 들지 않으면 허가를 하지 않는 식으로 운영될 수 있는 규제는 위헌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모든 공원 사용자들에게 65데시벨 이상의 음악을 연주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내용에 따른 차별이 아니지만, 종교단체 사용자들에게만 65데시벨 이상의 음악을 연주할 수 없도록 하면 내용에 따르는 차별이 되고, 따라서 위헌이라는 것이다. Ward v. Rock against Racism 사건에서 미연방 대법원은 뉴욕시가 센트럴 파크 야외음악당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연주시 시(New York City)에서 제공한 확성기(amplifier)만을 사용하도록 한 것은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적용되는 규정으로 보고, 위헌이 아니라고 하였다. 즉, 시에서 제공한 확성기를 사용하더라도 특별히 연주자들의 연주의 질(quality)

을 해하지 아니하므로, 내용중립적이라는 것이다.³³⁾

(2)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narrowly-tailored) 수단

규제가 정부의 정당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꼭 필요한 수단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대법원은 정부의 의견을 상당부분 존중하므로 이 요건을 만족시키는 것은 어렵지 않다. 앞의 센트럴 파크 음악당 사례에서 보면, 주변 사람들이 소음으로부터 업무나 수면을 방해받지 않도록 하는 것은 정부의 정당한 목적이 된다. 또한 ‘필요한’ 수단의 조건도 어렵지 않게 만족시킬 수 있는데, 규제가 없다면 정부 목적이 덜 효율적으로 달성되는 경우 필요한 수단의 조건을 만족시키게 된다.³⁴⁾ 목적달성을 위한 유일한 수단이거나 가장 엄밀하게 선정된 수단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례에서 소음규제 조례가 없었다면, 근린방해에 관한 법(nuisance law)에 의하여 소음을 처리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이것은 소음규제 조례보다도 덜 효과적으로 소음에 대처하는 방법이므로 조례에 의한 규제는 필요한 수단이라는 것이다.



32) Ward v. Rock against racism, 491 U.S. 781 (1989), Clark v. Cmty. for Creative Non-Violence, 468 U.S. 288, 293 (1984).

33) Ward v. Rock against racism, 491 U.S. 781 (1989), 특정 데시벨 이상의 음악을 연주할 수 없도록 규정하지 않고, 전문가에 의한 스피커를 통해서 음악소리의 크기 및 영향을 통제하도록 한 것은, 같은 크기의 소리라도 주변에 사는 사람들 중에는 특히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고려에서였다.

34) 앞의 판결.



(3) 대안(alternative for communication)의 존재

규제가 표현의 자유를 실천할 수 있는 다른 통로를 남겨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앞의 사례에서 보면, 센트럴 파크 음악당 연주자들이 비록 시에서 제공하는 스피커를 사용하나 계속 연주할 수 있는 자유가 남아 있다는 것이다. 다만, 육성으로 연설하거나 연주하는 것은 대안이 될 수 없다.³⁵⁾ 대안이 없이 언론을 전체적으로 봉쇄하게 되면 위헌이 된다.

2. 허가제의 운용 (Permit requirement)

(1) 일반적 원칙

허가제는 헌법적 제한하에서 운용가능하며, 위헌여부의 판단 역시 기본적으로 시간, 장소, 방법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 원칙에 따라 규율된다. 따라서 내용 중립적인 규제여야 하며, 목적달성을 위해 꼭 필요한 한도에서, 대안을 마련한 규제여야 한다. 또한 언론에 대한 사전통제는 위헌으로 엄하게 추정되며,³⁶⁾ 따라서 허가제 혹은

요금제(permit scheme or fee)는 법원에 의한 금지 명령(injunction, 가처분)과 함께 엄격한 요건하에서 가능하다.

언론에 대한 사전허가제는 특히 다음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첫째, 관리에게 무제한의 재량을 주어 자의적으로 금지 혹은 허가 수 있도록 하여서는 안된다. 연방대법원은 공공장소에서의 집회시 경찰서장으로 부터 확정기 사용허가를 받도록 한 조례상의 허가제를 경찰관리에게 자의적인 재량권을 주었다는 이유로 위헌으로 판결하였다.³⁷⁾ 둘째, 복잡한 신청절차를 만들어 사전에 신청 자체를 무력하게 만들거나, 신청이 거부된 후 법원에 의한 신속한 재심절차를 규정하지 않은 경우는 사실상 시위를 봉쇄하게 되므로 위헌이다.³⁸⁾

(2) 로스엔젤레스의 허가제

집회시위 허가신청은 경찰서에 원칙적으로 행사 40일 이전에 하여야 하나, 5일 이전에 하는 경우에도 이를 심사하여야 하며, 5일이 안되더라도 지정된 경찰위원은 이를 허가할 수 있다.³⁹⁾ 경찰이 부과한 조건에 대하여 신청자가 동의하



35) Saia v. New York, 334 U.S. 558 (1948).

36) Nebraska Press Ass'n v. Stuart, 427 U.S. 539, 558 (1976).

37) Saia v. New York, 334 U.S. 558, 560 (1948), "Public dissemination, through radio loudspeakers, of items of news and matters of public concern and athletic activities shall not be deemed a violation of this section provided that the same be done under permission obtained from the Chief of Police."

38) NAACP v. City of Richmond, 743 F.2d 1346, 1357-58 (9th Cir. 1984), 본건 조례는 집회 시위 최소 20일 이전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여, 시류에 따른 즉각적인 시위를 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

39) 앞의 조례, Section 103. 111, (e)(1)(A). 허가는 경찰서의 사실조사 후 허가 추천에 대하여 경찰위원장이 최종허가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지 않는 경우, 그 내용은 보고서에 첨부되어 경찰위원회에 보고된다.⁴⁰⁾ 이 경우 경찰위원회는 집회의 자유의 본질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간, 장소, 방법에 따른 적절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허가 신청시 수수료와 함께, 행사 후 청소 미이행시 부과될 수 있는 청소료를 예치하여야 한다.⁴¹⁾ 신청서는 사용도로, 방향, 시간, 참석인원, 관람자 예상인원을 밝혀야 하고, 행사에 사용되는 확성기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야 한다.⁴²⁾

경찰위원회는 도로의 사용허가가 이미 있는 경우, 교통체증이 심한 곳에서의 교통마비 예상, 정보요청에 대한 불응, 3마일 이상의 도로점유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불허할 수 있으나, 시간, 장소의 변경 등으로 용이하게 시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조건을 붙여 허가할 수 있다.⁴³⁾

집회의 허가가 거절되는 경우, 신청인은 3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경찰위원회는 당해 집회에 심사를 담당했던 위원을 제외하고 위원회를 소집하여 최종적으로 허가여부를 결정한다.⁴⁴⁾

3. 지나치게 넓거나 모호한 규제

지나치게 넓은 규제(over-breadth)는 법적으로



40) 앞의 조례, Section 103. 111, (e)(3)(A)(2).

41) 상업용 도로 사용의 경우, 집회 허가 후 교통 통제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단, 비상업용 도로 사용의 경우, 예치금은 신청에 의하여 면제될 수 있다(앞의 조례 Section 103. 111, l(3) 참조).

42) 앞의 조례, Section 103. 111, (e)(2)(A)(10).

43) 앞의 조례, Section 103. 111, (i)(1).

44) 앞의 조례, Section 103. 111, (j)(3)(A).

45) Board of Airport Comm'rs v. Jews for Jesus, Inc., 482 U.S. 569, 571, 577 (1987) 참조.

46) Smith v. Goguen, 415 U.S. 566, 568-69, 578 (1974) 참조.

로 보호되어야 할 언론의 자유임에도 불구하고 불법이 되어 처벌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오는 것이며, 모호한 규제(vagueness)는 일반시민들이 무엇이 금지되어 있는지 모를 수 있다는 우려에서 오는 것이다. 이러한 규정들은 법원의 심판을 받아 위헌으로 무효가 된다.

지나치게 넓은 규제의 예를 들면, 공항 구내에서 일체의 확성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 일정한 음량 이내의 확성기 사용은 법적으로 보호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금지되었기 때문에 지나치게 넓은 규제가 된다.⁴⁵⁾ 애매하여 위헌인 경우는 ‘듣기 불편한’ 소음은 금지된다는 규정과 같이, 일반인의 입장에서 보아 무엇이 금지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문구를 말한다.⁴⁶⁾

IV. 결론

미국에서 소음은 지역사정에 관한 정통한 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율된다. 주정부나 연방정부는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지도 및 안내를 주로 담당하고 있다. 그리하여 구체적인 사정에 적합



한 적절한 조례내용이 만들어지게 된다. 각 도시 및 자치단체는 상위법규, 즉 주법이나 연방법 혹은 연방대법원의 판례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객관성을 기하기 위하여 소음의 한도를 지목 별로 지정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정상적인 일반인을 기준으로 하는 소음 허용기준도 사용된다.

또한 구체적인 상황에서 개별적인 기준을 사용하는 것 또한 가능하다. 예를 들어, 플로리다에서는 시위에 의한 소음으로부터 환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병원건물로부터의 36피트 완충지대(buffer zone)를 지정하였고,⁴⁷⁾ 일리노이의 Rockford라는 도시에서는 학교 근처에서 방과

중 일체의 시위를 금지한 조례를 제정하였다.⁴⁸⁾ 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정, 특히 시위 중 소음을 제한하는 규정을 제정하는 경우, 이는 합리적인 규제로서 언론 자유의 시간, 장소, 방법을 규정하는 것으로, 내용중립적인 것이어야 하며, 정당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규제이어야 하며, 다른 표현수단의 여지를 남겨 놓아야 한다. 또한 지나치게 넓게 제한하거나 애매한 규정을 두어서도 안된다.

최 경 규

(외국법제조사위원)



47) Madsen v. Women's Health Center, 62 USLW 4686 (June 30, 1994).

48) Grayned v. City of Rockford, 408 U.S. 104 (1972).